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5가단208977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천 담당변호사 정공진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구영관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2.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품설계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설계, 구조해석, 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D'(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은 프레스금형 제작 및 제조업, 전자, 전기제품 디자인 및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779 저작권위반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이유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 피고 E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 C가 항소하였으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이 되었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인천지방법원 2023노2352)를 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인천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1. 1. 6.경까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G(현 D)’의 복제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MAC주소 1 생략)에 설치하여 이를 도면 확인 등에 업무상 이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 C는 평소 다른 프로그램(H)을 사용하여 도면을 확인하나 I로부터 받은 도면이 열리지 않아 I의 직원이 대상 프로그램을 피고인의 회사 컴퓨터에 설치하여 주었고 위 도면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뿐 다른 일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공소사실

피고인 E는 인천 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20. 10. 3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G(현 D)'의 복제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MAC주소 2 생략)에 설치하여 이를 도면 확인 등에 업무상 이용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피고인 C의 자녀로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대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위 프로그램이 수회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의 법정진술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피고인 E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대상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회사 사무실에는 컴퓨터 2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 중 한 대는 피고인 C가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한 대는 피고인 E과 다른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의 위 회사 내에서의 업무는 발주서 확인, 자재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이 도면 작업 내지 위와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E이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내 컴퓨터에 대상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수회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E이 대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 E이 대상 프로그램을 열어 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이 이러한 행위가 대상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한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I의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여 만든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이를 업무상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 C의 위 행위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C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주식회사는 그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피고 회사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 C가 I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성명불상의 피고 회사 직원은 2019. 1. 13. 피고 회사 내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 1개를 불법 복제하였고, 그렇게 불법 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은 E의 컴퓨터에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것이며, 외형상 객관적으로 성명불상의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 복제한 행위 및 사용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성명불상 직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이 E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등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료 상당액 900,000,000원 중 일부로 100,000,000원을 청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C의 침해기간 및 침해경위, 이 사건 프로그램은 통상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점, 피고 C가 설치한 모듈 전부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제품의 기간 사용료 견적서 등을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18,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1. 6.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희